KiRi Weekly 2013.2.25
금융보험 해설

퇴직연금의 이해 4: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

오병국 연구원

■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[1]에서는 회사가 확정기여형(DC: Defined Contribution)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근퇴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의 설정,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,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, 적립금의 중도인출, 복수사용자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.

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수령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.

- 근퇴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  -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
  -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
  -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  -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
  -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- 이상의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.

■ 이외에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(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)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함.
  -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스스로 납입하는 부담금을 본인의 확정기여형 퇴직

1) 이하 '근퇴법'으로 통칭함.

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.

-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함.
  -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부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40%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함.
  -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함.

- (적립금 운용방법)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,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.
  - 퇴직연금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함.
    - 이는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 위험과 예상수익률이 다른 다양한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.
- (적립금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)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.
- (적립금의 중도인출)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음.
  -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예측하지 못한 일시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- (복수사용자 설정에 관한 사항)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면 표준규약,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